

EBS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공고번호 : 제2021-21호

「한국교육방송공사 직영발행교재 인쇄업체 선정」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한국교육방송공사

1. 입찰유의서

1. 입찰명 : 2022년도 한국교육방송공사 직영발행교재 인쇄업체 선정

2. 목 적

-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이라 한다)가 행하는 인쇄(제작) 대행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입찰 품목은 국가적 시책의 일환으로 제작하는 교재로 제작 기간 준수, 제작물의 질적 보장, 파본 교재의 신속 처리, 제작물의 신속한 납품 등 교재 제작의 중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3. 계약의 종류 :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전소사업)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구성(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중복 입찰 참여 금지)하며, 인쇄기(운전기 및 매엽기) 보유 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계약은 대표자와 EBS가 체결한다.

4.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5. 입찰품목

- [가] 그룹 : 4*6 운전

구 분		비 고
1품목	국어(고교), 과학(물리, 화학)	4*6 운전 고교 국어 교재 및 수능특강 일부(독서, 언매), 고교 과학(물리, 화학, 통합과학) 교재
2품목	국어(초, 중), 과학(생물, 지구과학)	4*6 운전 초, 중 국어 교재 및 수능특강 일부(문학, 화작), 고교 과학(생명, 지구과학) 교재 및 초, 중 과학 교재
3품목	영어(고교)	4*6 운전 고교 영어 교재 및 수능특강 일부(영어)
4품목	영어(초, 중)	4*6 운전 초, 중 영어 교재 및 수능특강 일부(영듣, 영독)
5품목	수학	4*6 운전 수학 교재
6품목	사회, 종합, 세트	4*6 운전 사회 교재 및 종합서, 세트작업

○ [나] 그룹 : 국 운전 인쇄

구 분		비 고
7품목	국어	국 운전 국어 교재 및 문해력 교재 일부
8품목	영어, 사회	국 운전 영어, 사회 교재 및 문해력 교재 일부
9품목	수학, 과학, 종합 (중, 고)	국 운전 중학, 고교 대상 수학, 과학 교재, 종합서 및 수능 완성 일부(미적, 기하, 물화생지 I)
10품목	수학, 과학, 종합(초등), 세트	국 운전 초등 대상 수학, 과학 교재, 종합서 및 수능완성 일부(확통, 물화생지 II), 세트작업

- ※ 1. 각 그룹은 교재 본문 규격을 기준으로 구분
2. 교과 구분은 “EBS”가 직영 출판으로 발행하는 초·중·고 대상 학습 교재로 하며, ‘종합서’는 교과구분이 없거나 교과 통합형태로 발행하는 교재임(종합서는 학교급 또는 학년으로 구분하지 않음)
3. 세트는 각 교과를 취합하여 제작하는 세트물(초등 등)의 부가적인 인쇄물(스티커, 부록 등)과 이에 수반 되는 작업(취합, 투봉, 세트 완제품 납품 등)임
4. 문해력 교재의 경우 시리즈별 또는 교재별로 “EBS”가 품목 지정
5. 교재개발(재활용 포함) 과정 중 신규교재가 개발되거나 기존 교재가 폐간될 수 있음

6.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나 기타 처분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아래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입찰 등록 마감 일시 까지 참가 신청을 하고, EBS로부터 입찰 참가 승낙(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합격 후)을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가. 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62조(인·허가사항)에서 정한 유자격자 및 동 시행세칙 제250조 제1항 각 호(부정당업체제한)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공장등록증명(신청)서에 등록된 종업원 수가 15인 이상인 자

※ 입찰 제출서류(의료보험 납입증명서)를 통해 종업원 수가 확인되어야 함

다. 다음 시설을 소유(리스 포함, 임차 제외) 및 설치하여 운영(가동) 중인 자

구 분	소 유 시 설	
[가] 그룹	4/4도 이상 오펜트 4*6 운전 인쇄기 1대 이상	4도 이상 오펜트 매엽 인쇄기 1대 이상 30콤마 이상 무선 자동온라인 제본기 (정합, 무선, 삼방재단) 1대 이상
[나] 그룹	4/4도 이상 오펜트 국 운전 인쇄기 1대 이상	

※ [가], [나] 그룹에 모두 입찰을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제본기는 1대 이상이어도 가능하지만 [가], [나] 그룹 2개 품목에 모두 낙찰되는 경우 제본기는 각각 별도로 추가되어 총 2대 이상이어야 함. 단, 이 경우 1대는 15콤마 이상, 1대는 30콤마 이상이어도 됨.

○ 소유 시설은 입찰 공고일 기준 4개월 이전까지 구매(국세청 신고 포함) 완료 또는 리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금융 감독위원회의 등록을 마친 리스업체) 계약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여시설에 한함

- 소유(리스포함) 시설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제작(생산)된 기기로 최근 3년 간 연도별 정비(수리) 내역이 있어야 하며, 입찰참여자(동일인)의 동일 장소(공장등록증 주소지)내에 설치 및 운영(입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가동) 중 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인쇄기(운전 및 매엽)를 보유한 업체와 제본기를 보유한 업체로 구성되어야 한다.

라. 위 각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찰서류를 서류접수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업체

7. 입찰 참가 신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제출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지정시간내 제출처 도착분 까지 인정 마감시간 엄수

- 제출기간 : 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등기제출 등 불가

- 제출처 : 한국교육방송공사 교재기획출판부(15층) ※ 신청 후 '접수증' 반드시 수령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EBS" 소정 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및 구청발행 공장등록증명(신청)서 각 1부

다. 건물(사무실 및 공장)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라. 제2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2공장에 대한 "나"호 및 "다"호 서류 각 1부

마.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개인 등본) 및 인감 증명서 각 1부

바. 전 직원 의료보험납입증명서(최근 3개월간 가입자 명부)

사.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입찰일로부터 60일 이상) 1부

아. 업무전담 예정자 및 감리전담 예정자 재직증명서(이력서 포함)

자. 입찰참가자격의 소유시설에 대한 내역서("EBS" 소정 양식)와 소유사실을 증명·확인할 수 있는 수입원장, 세금계산서(기 신고 완료 분), 거래명세서, 리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일체 사본

차. 청렴이행각서 1부("EBS" 소정 양식)

카. 사무실 및 공장 약도(연락처 포함)

타.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기 정비 및 유지보수 내역 1부

파. 어린이제품 KC인증 관련 시험성적서(종이, 잉크, 풀, 코팅제)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단, 사본 제외)이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상기 각 호의 순서대로 작성하여 원본 1부, 복사본 1부 및 PDF(또는 스캔)파일로 제출서류 일체가 수록된 USB 1개 제출

※ 사본서류 제출 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고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이어야 함.

※ 어린이제품 KC인증 관련 시험성적서는 계약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든 서류를 제출하며, 추가로 공동수급협정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8. 현장실사

- 입찰서류를 입찰 등록 마감 일시까지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EBS” 심사 기준에 따라 제출서류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통과한 입찰 참여 대상자를 (유선)통보한다.
- 제출 서류의 허위(시설의 미비 또는 서류상 내용과 불일치 등)가 발견되는 업체는 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사후 발견 시에는 기존 입찰 참여 진행 사항 일체를 취소할 수 있다.
- 현장실사는 “EBS”가 실시하며, 입찰 참여자는 현장실사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입찰 참가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9.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 신청(서류등록) 시 181,000,000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가], [나] 2개 그룹의 입찰에 모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그룹별로 각각 181,000,000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입찰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현금으로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입찰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입찰 보증금은 전액 EBS에 귀속한다.

1. 최종 낙찰자가 지정 기일 내에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담합입찰을 하거나 타인의 경쟁 입찰 참가를 방해한 경우
3.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10. 입찰 방법 및 순서

- 입찰은 입찰 참가 승낙을 받은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소유한 시설 및 입찰보증금에 따라 각 그룹에 응찰(2개 그룹 모두 응찰 가능)할 수 있다.
- 입찰 장소 입장 및 입찰은 입찰 참가 신청인 또는 위임대리인(위임장 제출필)만이 가능하며,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한 사용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 ※ 입찰 진행 시 핸드폰을 포함하여 유무선 통신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
- 입찰은 다음의 입찰 품목 순서별로 1개씩 실시한다.

입찰 품목 순서	구 분	
1	[나] 그룹 [국 운전]	국 어
2		영어, 사회
3		수학, 과학, 종합(중, 고)
4		수학, 과학, 종합(초등), 세트
5	[가] 그룹 [4*6 운전]	국어(고교), 고교 과학(물리, 화학)
6		국어(초, 중), 고교 과학(생물, 지구과학), 초·중 과학
7		영어(고교)
8		영어(초, 중)
9		수학
10		사회, 종합, 세트

- 입찰 참여 대상자로 2개 그룹 모두 통보받은 업체는 2개 그룹에 모두 입찰 참여 가능하고 낙찰 가능 품목은 2개 품목까지 허용하나, 동일 그룹 내에서는 1개 품목으로 제한한다.
- 낙찰자 선언은 해당 입찰 일자의 모든 품목의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품목별로 최종 낙찰 선언 및 낙찰비율을 공개하고, 입찰 과정 중에는 해당품목의 낙찰자명만을 공개한다.
- 입찰 순서에 따라 입찰 진행 시 유찰 품목이 발생할 경우 동일 장소에서 추가 입찰을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때까지 실시하며, 동 품목에 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후에 그 다음 입찰 순서에 해당하는 품목의 입찰을 실시한다.

- 입찰 순서에 의한 각 그룹의 품목별 낙찰자는 별도의 낙찰자 좌석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동 품목 응찰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누설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동 품목의 낙찰을 취소하고 모든 입찰에 참여를 제한한다.

11. 입찰서 작성

- 입찰서는 입찰 당일 배부하는 입찰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공고로서 정한 「2005년 조달청 발표 '인쇄기준요금'(첨부 참조)을 적용한 원가산출 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한 응찰(계약) 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에 말소 또는 정정 부분은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찰 비율은 말소 또는 정정할 수 없다.
- 입찰서의 응찰 비율(%)은 아라비아 숫자로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한다.[(예) 98.76%]

12.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밀봉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13.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 방법은 공고로서 정한 「2005년 조달청 발표 '인쇄기준요금'을 적용한 원가산출 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한 응찰비율이 “EBS” 예정비율 이하로 응찰한 자 중 최저 비율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동일비율 응찰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 × 추첨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용지 품질 검사를 위한 본문 용지 샘플을 제출하여야 한다.
 - ※ 용지생산 즉시 A4크기 30매 이상을 골판지를 이용, 구겨지지 않게 검은색 비닐 봉투에 담아 밀봉하여 3부 제출(용지 생산자 발행 품질검사 시험 데이터 자료 첨부)

14. 입찰의 무효

-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동일 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5.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명확하거나 정정한 후 날인을 누락한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한 자의 입찰
7.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8. 입찰 참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허위 및 위·변조하였을 경우
9. 기타 “EBS”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28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입찰

15. 계약체결

- 각 그룹의 품목별 최종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이에 대하여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상기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해 낙찰 취소된 품목은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거나, 각 품목별 최종 낙찰자를 제외하고 “EBS”예정비율 이하로 응찰한 자 중 최저비율 응찰자 순으로 수의계약(계약해지 품목의 계약비율 기준)을 통하여 해당 품목 계약자로 선정할 수 있다.

16.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계약 품목별로 각각 362,000,000원을 계약체결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EBS” 및 공공기관에 계약 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물품(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초·중·고교 학습참고서 또는 교과서)을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상기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 낙찰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상기 계약보증금은 “EBS”에게 귀속한다.

17. 입찰 및 계약의 성립

- 본 입찰은 경쟁 입찰로서 모든 품목별로 복수의 입찰참여로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 계약은 공사와 계약대상자(최종낙찰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체결 전까지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계약자가 계약 기간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지 또는 해제된 품목은 “EBS”가 필요시 별도의 업체선정 절차 없이 각 품목별 최종 낙찰자를 제외하고 “EBS”예정 비율 이하로 응찰한 자 중 최저비율 응찰자 순으로 수의계약(계약해지 품목의 계약 비율 기준)을 통하여 해당 품목 계약자로 선정하거나, 동 입찰로 계약된 타 품목 계약 업체와 추가로 계약할 수 있다.

18. 관계사항의 숙지

-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 내용, 입찰 유의서, 계약조건, 제작 사양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 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EBS”로 문의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9. 안내 및 문의

- 주 관 : 한국교육방송공사 학교교육본부 교재기획출판부
- 답 당 : 정영환
- 사업관련 및 계약관련 문의
- TEL : 02-526-2957, e-mail : ebsfuture@ebs.co.kr

붙 임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

붙 임 2. 시설소유내역서(서식). 끝.

소유 시설 내역

구분	제작사	기기명(모델명)	시리얼번호	색도 (콤마)	제작 년/월	구입 년/월	생산능력 (1일)
운 전 기	국 윤 전						
	4x6 윤 전						
매 엽 기							
제 본 기		무선 :					
		정합 :					
		삼방 :					
		무선 :					
		정합 :					
		삼방 :					
기 타							

첨부 : 소유 기기별 수입원장 또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 명세서 등 증빙서 각 1부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사용인감)

한국교육방송공사 귀하

II. 계약조건

계 약 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한다) 와 _____(이하 “인쇄협력사”라 한다)는 『2022년도 EBS 직영발행교재 품목_____인쇄(제작) 계약』 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EBS”와 “인쇄협력사”가 EBS 직영교재 발행·보급 사업의 중요성과 그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① “인쇄협력사”는 별첨 「2022년도 EBS 직영발행교재 공통사양서」에 따른 교재 제작(인쇄)을 위해 “EBS”의 편집 대행사와의 필름 또는 데이터파일 인수, 교재 제작(인쇄 및 제본 등), 포장, 납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② “2022년도 EBS 직영 발행교재”란 “EBS”가 2022년도 교재개발계획에 의거 초등, 중학, 고교(연계 및 비연계) 및 단행본 등 발행 대상 교재로 결정한 교재를 말한다. 단, 2023년도 인쇄협력사가 선정되기 전 2022년에 선발행되는 2023년도 교재를 포함할 수 있다.

제4조(계약비율) ① 계약비율은 “EBS”가 정한 「2005년 조달청 발표 ‘인쇄기준요금’을 적용한 원가산출 방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 대해 인쇄비 지급 시 적용하는 비율로서 _____%로 정한다.

②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반영은 제 8조에 정한 ‘대금산출 방식’에서 지대 가격을 발주 당월 물가자료(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를 적용하여 반영한다. 만약 물가자료에 없는 지대의 경우 당월 ‘페이퍼 프라이스 홈페이지’의 고시 가격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인쇄협력사”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 _____원을 “EBS”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은 현금(자기앞수표 포함)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인쇄협력사"가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EBS"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위약별로 계약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계약보증금은 "EBS"에 전액 귀속되고, 이와 별도로 "EBS"는 "인쇄협력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이행 완료한 후 "인쇄협력사"의 청구에 의해 반환한다.

제6조(제작사양) ① "EBS"의 교재 개발 계획에 의거 전년도 기준의 교재가 폐간되거나, 신규 교재가 발행 될 수 있으며, 교재개발 및 발행과정 중 사양(규격, 색도, 면수, 지질 등)이 변경될 수 있다.

② 교과별 교재 발행 책 수, 부수, 교재 규격, 예상면수 등은 교재개발 과정 및 판매 추이에 따른 변동이 많이 발생하므로 별도로 사전 제공하지 않으며, 공통 사양서만을 제공한다.

③ "인쇄협력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변동사항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 및 인지하고 계약체결에 임하며, 이에 대하여 "EBS"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본문용지) ① "인쇄협력사"가 사용하여야 할 본문 용지(원지)는 별첨 「2022년도 EBS 직영발행교재 공통사양서」에서 정한 품질(사양) 검사 후 EBS가 승인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EBS"의 요청 시 "인쇄협력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본문 용지(원지)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인쇄협력사"는 교재 제작 과정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지(원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EB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의 승인된 용지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EBS"에 통보 후 변경할 수 있다.

③ "EBS"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본문용지의 품질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대금산출방식) ① 제작대금 산출방식은 「2005년 조달청 발표 '인쇄기준요금'을 적용한 원가산출 방식」에 별첨 「2022년도 대금산출 및 후가공 기준표」와 발주 당월 물가자료(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의 서울기준 지대(종이)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계약비율을 승하여 산출(부가가치세 포함)한다. 만약 물가자료에 없는 지대의 경우 당월 '페이퍼 프라이스' 홈페이지의 고시 가격을 적용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때 발주부수를 기준으로 3,000부 이상은 윤전인쇄 단가[표지, 간지(속표지 포함) 및 별지 등은 매엽 인쇄

단가 적용]로, 그 미만은 매엽인쇄 단가를 대금 산출에 적용한다.

② 교재별 판매추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인쇄에서 3,000부 이상 5,000부 미만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본문(해설포함) 인쇄비에 30%를 가산한다.

제9조(인쇄대금의 지급) "인쇄협력사"는 매 발주건(교재)별로 "EBS"의 발주서에 의한 인쇄물품의 납품을 완료한 후 "대금산출 청구(계산)서"와 함께 납품부수에 대한 입고 확인 내역[EBS 물류대행사 날인 포함 및 입고증 사본(EBS 물류대행사 확인 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인쇄협력사"의 계산서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EBS"가 지급한다. 다만, "EBS"의 예산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 "인쇄협력사"와 협의하여 지급기일을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인쇄대금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 체결 후 인쇄대금 지급에 하거나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거나, 기타 내·외부감사의 지적사항 등으로 인쇄대금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인쇄협력사"는 언제라도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동 증빙자료의 위·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증빙자료의 제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EBS"는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③ "EBS"는 계약 종결 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쇄협력사"에게 지급할 지급금이나 타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인쇄협력사"가 "EBS"에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쇄협력사"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1조(지체상금) ① "인쇄협력사"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교재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인쇄대금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EBS"가 "인쇄협력사"에 지급할 대가(인쇄대금) 등과 서로 상계할 수 있다.

② "지체상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EBS"가 발주한 수량 중 "인쇄협력사"가 미 납품한 수량(금액)에 한하여 지체상금을 적용
2. 납품 이후 유통과정에서 "인쇄협력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파본(제본 및 인쇄 불량

등 포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수량에 한하여 지체상금을 적용(지체일수는 정상 교재로 대체 납품이 완료된 시점)

③ “지체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을 하였을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납품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상기 제2항 2호의 경우에는 정상교재로 대체 납품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손해배상) "인쇄협력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EBS"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EBS"는 "인쇄협력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권리의무 양도 금지) "인쇄협력사"는 "EBS"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EBS"는 "인쇄협력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보증금은 "EBS"에 귀속되고, "인쇄협력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EBS"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1. "인쇄협력사"가 납품기한을 10일 이상 초과할 경우
2. "인쇄협력사"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별첨 「과업지시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업무진행 차질 및 교재 품질 저하(과본 포함) 등이 발생할 경우
4.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제출한 용지가 "EBS"가 지정한 품질에 미달할 경우
5. 나머지 기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소송의 관할 법원은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법으로 한다.

제16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EBS"와 "인쇄

협력사" 쌍방 간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 제17조(기타) ① 별첨 「과업지시서」는 본 계약서의 일부로서, 본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 ② 계약기간 중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즉시 계약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EBS”와 “인쇄협력사”가 협의하여 추가로 약정할 수 있다.
- ④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EBS”와 “인쇄협력사”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EBS”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한 국 교 육 방 송 공 사

“인쇄협력사”

III. 청렴계약

청렴계약(입찰) 이행 서약서

당사는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

IV.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EBS 직영발행교재에 대한 인쇄(제작)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입찰건명 : 2022년도 EBS 직영발행교재 인쇄업체 선정 입찰
2. 발주자명 : 한국교육방송공사

제2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2. ○○○회사(대표자:)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2022년도 EBS 직영발행교재 인쇄업체 선정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3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종료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4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책임) 대표자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대표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7조(거래계좌) 발주자로부터 인쇄비는 대표자의 다음 계좌로 받은 후 구성원 간의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간 합의하여 정산한다.

1.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8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인쇄(운전 및 매엽) : ○○○회사
2. 제본 : ○○○회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9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대표자가 우선 그 손해를 부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

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계약 의무 이행 내용에 하자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대표하여 우선 그 책임을 지며, 구성원간의 책임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3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1통씩 각자 보관하며 1통은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제출한다.

2021년 10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